

 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0. 1. 9.(목) 배포</p>	
보도일	<b>배포 즉시</b>		
담당과	규제개혁법무담당관	담당자	과 장 오신종 (☎ 044-203-6648) 사무관 박지혜 (☎ 044-203-6683)

##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**◆ 국·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**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제374회 국회(임시회) 본회의에서 국·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「교육공무원법」 등 3개 법안이 1월 9일(목)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.
-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*[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 ]**

-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,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·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.
-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동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.
- 또한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(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)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. **【붙임】 참고 2-□**

**[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,  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) ]**

-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이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계열별 임용계획 등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고,
-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칙으로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하여 노력하게 하여, 국립대학법인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
【붙임】 참고 2-②, ③

- 【참고】 1. 1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 
2.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

법안명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육공무원법	양성평등정책담당관	과장 김지연(7112), 강정훈 사무관(7115)
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	국립대학정책과	과장 송은주(6804), 신나라 사무관(6867)
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	국립대학정책과	과장 송은주(6804), 신나라 사무관(6867)



**참고 1****1.9.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**

순	법률안	주요내용
1	<b>교육공무원법</b> 오세정 976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체 국·공립 대학의 교원 중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, 연도별 목표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</li> <li>• 대학의 장은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교육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함</li> <li>• 국가 등은 대학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</li> </ul>
2	<b>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</b> 임재훈(바) 1879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</li> <li>•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</li> <li>•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li> </ul>
3	<b>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</b> 임재훈(바) 1879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</li> <li>•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</li> <li>•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추진 실적을 국가가 평가하여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</li> </ul>

## 참고 2

##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

### 1 교육공무원법 (일부개정)

□ 「교육공무원법」 일부개정안은 전체 국·공립 대학의 교원임용 성별 편중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국가(지방자치단체)는 전체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,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.
- 국·공립 대학의 장은 교원 양성평등 임용계획을 교육부장관(해당 지자체의 장)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,
- 국가(지방자치단체)는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국·공립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양성평등정책담당관	과장 김지연(7112), 강정훈 사무관(7115)





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---제6항에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⑧ 제5항에-----  
-----제6항에-----

-----  
-----.

##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

□ 「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다.
- 총장은 계열별 임용계획 등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 후 추진실적을 제출하고, 교육부 장관은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행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국립대학법인 교원 임용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	국립대학정책과	과장 송은주(6804), 신나라 사무관(6867)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15조의3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</u></p>

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(일부개정)


□ 「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은 국립대학법인의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였다.
- 총장은 계열별 임용계획 등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·시행 후 추진실적을 제출하고, 교육부 장관은 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여 행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또한,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국립대학법인 교원 임용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 국립대학정책과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 과장 송은주(6804), 신나라 사무관(6867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 정    안
<p><u>&lt;신    설&gt;</u></p>	<p><u>제6조의2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, 평가</u></p>

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·재정  
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  
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  
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  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 
한다.